

## 어업회사법인 합명[ ] 합자[ ] 유한책임[ ] 유한[ ] 주식[ ] 회사 설립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0일	
신고인	성명(어업생산자단체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	전화번호		
신고 내용	법인명	전화번호		
	소재지			
	사업 내용	목적 및 사업		
		주사업	어업·양식업의 경영[ ] 수산물의 출하·유통·가공·판매 및 수출[ ] 어작업의 대행[ ] 농어촌관광휴양사업[ ] 낚시터업[ ]	
		부대사업	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[ ]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[ ]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[ ] 수산장비 등의 임대·수리 및 보관사업[ ]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[ ]	
		생산분야	연근해어업[ ] 해면양식어업[ ] 내수면양식어업[ ] 원양어업[ ] 소금생산업[ ] 그 밖의 분야[ ]	
		생산품종		
	임원	구분	성명	어업인 여부
출자 규모	구분	사원·주주의 수(명)	출자액(원)	
	어업인, 어업생산자단체			
	비어업인			
	계			

(뒤쪽)

출자 관련 사항	총 출자좌수·출자주 식수 및 출자 1좌·1주의 금액	
	납입방법	
	산정방법	
	사원·주주 1인당 출자한도	
해산 사유		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관 1부</li> <li>사원·주주 및 임원의 명부 1부</li> <li>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1부</li> <li>각 사원·주주가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</li> <li>출자 1좌·1주당 금액과 사원·주주별 보유 중인 출자좌수·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1부</li> <li>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부</li> <li>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(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,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·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) 1부</li> <li>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(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이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,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·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) 1부</li> </ol>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### 작성 방법

- 목적 및 사업란은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예정인 목적 및 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합니다.
- 생산분야와 생산품종란은 사업 내용에 어업·양식업의 경영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- 해산 사유란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작성합니다.
-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이용합니다.

### 처리 절차

